



## 학·학 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김천대학 중앙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이 지식기반 사회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중요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,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정보의 유통 및 공유,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양 도서관은 다음 각 조와 같이 협약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양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자료를 상호 이용함으로써 교수활동 및 왕성한 학술연구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자료의 이용자격)

자료의 이용은 협약기관의 요청 및 협약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. 단,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3조(자료이용)

자료의 열람, 대출, 복사의 이용은 각 기관의 규정과 개관시간에 따르며, 문헌복사는 각 도서관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우편, e-mail, FAX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. 단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협약하여 정한다.

### 제4조(자료교환)

양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상호 교환한다.

### 제5조(정보교환)

양 대학 도서관은 기타 운영과 자료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.

### 제6조(협약)

양 대학 도서관은 본 협정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상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.
2. 본 협약서는 김천대학 중앙도서관장과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협약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하다.

2004. 11. 25.

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 
관 장 전 재 봉

김천대학 중앙도서관  
관 장 윤 옥 현